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5. 27.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의 진상조사 및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 확인되어진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정의(안 제2조)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또는 사법부의 판단 입증 받은 사람

나.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murayzzang@korea.kr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근 거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